

영업등록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직권말소 대상업체

업종 (인허가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제20100015059호)	저멘하스	정*석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24

2. 직권말소 예정사항

- 예정내용: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사항 직권 말소
-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폐업
-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2. 2. 24.(목)
-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의견제출서 제출
(팩스: 02-2640-1316, 전자우편주소: sevios22@korea.kr, 우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고 지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사 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2-2640-1316, 팩스: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